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스포츠대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교육·점검 시행 의무화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65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스포츠대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교육·점검 시행 의무화 (안 제11조의2 신설)	2
※ [참고] 시설유형·분야별 안전 관련 주요 법령 현황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4. 30.

다.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스포츠대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교육·점검 시행 의무화 (안 제11조의2 신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2(이스포츠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이하 “이스포츠행사”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자는 이스포츠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024년 기준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872억원 수준으로 2022년 2,383억원 대비 489억원(20.5%) 증가하였고, 이스포츠대회에서 사용되는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종목사(Game publisher)¹⁾의 매출도 2022년 199억원에서 2024년 234.1억원으로 35.1억원(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2~2024년 이스포츠 산업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2년 대비 '24년 증감(률)
산업 규모	2,383.0	2,569.5	2,872.1	489.1 (20.5%)
상금 규모	216.4	190.1	183.1	△33.3 (△15.4%)
게임단 예산	963.0	1,115.5	1,426.1	463.1 (48.1%)
미디어업 매출 ^{주1)}	862.5	959.2	922.9	60.4 (7.0%)
종목사 매출 ^{주2)}	199.0	186.0	234.1	35.1 (17.3%)
데이터 플랫폼 매출	142.1	118.7	105.9	△36.2 (△25.5%)

※ 주1) 스트리밍 및 프로덕션 매출 등

주2) 중계권, 스폰서십/광고, 티켓 수입으로 구성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이스포츠 실태조사(p. 407)” 재가공

2024년에 국내 이스포츠 대회가 225개 개최되었는데²⁾, 다수가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임에도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

1) 대표적인 이스포츠 종목사인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는 자사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통해 LCK(League of Legend Champions Korea), LoL World Championship(이른바 ‘월드컵’)을 주관하고 있음.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이스포츠 실태조사” p.32

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이하 “이스포츠행사”라 함)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이스포츠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이스포츠행사에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람객과 참가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스포츠산업이 신뢰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이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이미 「국민체육진흥법」³⁾상 체육행사 안전관리 의무와 개별 시설별 안전 법령⁴⁾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스포츠(전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 안전), 「공연법」(공연 안전·재해대처계획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PC방 안전), 「건축물관리법」(전시장 등 안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게임산업협회도 현행 법체계상 다중 밀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이미 다수의 일반법·특별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바, 「이 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시설유형 · 분야별 안전 관련 주요 법령 현황

시설유형 및 분야		적용 법령	법령 주요 내용
시설 유형	공연장 (아레나 등)	「공연법」	■ 제11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운영자 화재나 그 밖의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자체장에게 신고 ■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안전관리 필요 비용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 계상 ■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포함하여 안전관리조직 두어야 함 ■ 제11조의4(안전교육)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실시 의무 ■ 제11조의5(피난안내),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공연장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 및 검사받아야 함 / 정기안전검사(등록한 날부터 3년 초과 등) / 정밀안전진단 / 매년 자체 안전검사 실시 / 지자체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 요구 및 이행 의무 ■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문체부 장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2개 이상 지정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체부 장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 업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가능 ■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에의 이행)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체육시설 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의 시설물 보수·보강 필요 조치 이행 및 시정명령 ■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문체부 장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관람장 등)	「건축물 관리법」	■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다중이용업소 (pc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등
분야	소방안전 (시설공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조치, 소방안전관리 등 ■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자체점검 등
	인파관리 (대규모행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